

농산물산지유통센터(대관령원협)무상임대 동의안

의안 번호	214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6. 2. 17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농산물 주산지에서 품목에 맞는 1차가공(전처리)시설을 설치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, 고랭지 농산물 산지유통의 거점시설로 육성하고자 설치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(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) 운영 활성화와 유통시설 운영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하여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34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3호, 제3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을 위탁운영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가. 설치근거

- 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」 제51조(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)
 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·포장·규격출하·가공·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 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나. 대상 건축물

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58, 258-5, 254번지
- 규 모 : 부지 14,419㎡, 건축연면적(PEB 철골구조) 3,410.18㎡
- 사업비 : 7,461,600천원(국비 3,730,800, 도비 1,118,640, 군비 1,306,080 대관령원협 1,306,080)
- 사업기간 : 2004. 12. 28 ~ 2006. 4(2006. 4. 15 준공예정)

○ 건축물 시설내역(단위 : m²)

- 전처리실 : 316.36
- 세정살균실 : 289.80
- 원료창고 : 248.57
- 완제품창고 : 214.20
- 감자탈피실 : 527.95
- 계근실 : 17.64
- 기계실 : 161.43
- 냉장·포장가공실 : 304.78
- 박스포장·세척실 : 265.31
- 사무실외 기타 : 960.94
- 오페수시설 : 103.20

○ 기계장비류

- 채소전처리시스템 : 3조
- 계근대 : 1조
- 수배전반 : 1조
- 지하수 관정 : 1조
- 오페수실 : 1조

3. 운영 및 사후관리

○ 시설설치 : 평창군(건축물 3,410.18m², 기계시설 전부)

○ 부지제공 및 시설물 운영 :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

○ 평창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의 무상대부·사용·수익을 허가하고,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행시는 관계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시정 조치

① 평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1호

②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.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2호

③ 평창군수가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평창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(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)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3호

-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은 건축물 허가당시 이상의 부지를 평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로 무상제공(국고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)하며,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의 거점 시설로 운영하고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거점 산지유통시설로의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
-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창군수는 승인결과를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발췌서 붙임 참조

- 「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」 제51조(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 등)
-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28조 제1항(잡종재산 관리 및 처분)
-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」 제34조 제1항 제2호(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)
-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1항 제13호(잡종재산 대부 계약 등)
-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35조 제1항 제1호(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)

나. 농산물유통시설물의 무상임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계법령에 의거 평창군(건축주)과 운영자(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)상호 간 협약서를 별도 작성하여 운영

농산물산지유통센터(대관령원협)무상임대 동의안

□ 임대 대상건물

- 소재지 :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차항리 258, 258-5, 254번지
- 규 모 : 부지 14,419m², 건축연면적(PEB 철골구조) 3,410.18m²
- 사업비 : 7,461,600천원(국비 3,730,800, 도비 1,118,640, 군비 1,306,080
대관령원협 1,306,080)
- 사업기간 : 2004. 12. 28 ~ 2006. 4(2006. 4. 15 준공예정)
- 건축물 시설내역(단위 : m²)
 - 전처리실 : 316.36
 - 세정살균실 : 289.80
 - 원료창고 : 248.57
 - 완제품창고 : 214.20
 - 감자탈피실 : 527.95
 - 계근실 : 17.64
 - 기계실 : 161.43
 - 냉장·포장가공실 : 304.78
 - 박스포장·세척실 : 265.31
 - 사무실외 기타 : 960.94
 - 오페수시설 : 103.20
- 기계장비류
 - 채소전처리시스템 : 3조
 - 계근대 : 1조
 - 수배전반 : 1조
 - 지하수 관정 : 1조
 - 오페수실 : 1조

□ 운영 및 사후관리조건

- 시설설치 : 평창군(건축물 3,410.18m², 기계시설 전부)
- 부지제공 및 시설물 운영 :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
- 평창군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의 효율화와 지역 농특산물 생산 및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운영자에게 다음 조건을 부하여 시설물의 무상대부·사용·수익을 허가하고 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을 하고 불이

행시는 관계규정 및 협약서에 의거 시정 조치

- ① 평창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평창군수가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하는 때에는 즉시 이에 응할 것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1호

- ② 대부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부목적 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대부 목적외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.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2호

- ③ 평창군수가 매수를 요구하는 때에는 평창군수가 정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(건물 준공일로부터 10년 이후)

☞ 「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」 제29조 제4항 제3호

- 대관령원예농업협동조합은 건축물 허가당시 이상의 부지를 평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로 무상제공(국고보조사업 사후관리기간 10년 이상)하며,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지역농산물의 품질향상 및 산지유통의 거점 시설로 운영하고 생산자 또는 다른 생산자단체와 협의하여 거점 산지유통시설로의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
- 시설물을 이전하거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평창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평창군수는 승인결과를 강원도지사를 경유하여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
관계 법령 발췌서

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

- ◇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51조(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의 설치·운영 등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수산물의 선별·포장·규격출하·가공·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이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지확보 또는 시설물설치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

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

- ◇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8조(관리 및 처분)

①잡종재산은 대부·매각·교환·양여·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,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.

- ◇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34조(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)

①잡종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

2호.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있는때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

- ◇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29조(잡종재산 대부계약등)

①법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익계약에 의하여 대부할 수 있다.다만, 대부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야한다

13호. 당해 시·도, 시·군 및 자치구를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·전시 또는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관련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부하는 때

◇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35조(대부료 면제 또는 감면)

①법 제34조 제1항 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”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

1호. 제2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